**「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법률, 2003.12.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은행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행위를 규범화하며 은행업의 리스크를 방지·해소하고 예금인과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은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전국의 은행업금융기구 및 그 업무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담당한다.이 법에서 지칭하는 은행업금융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설립된 상업은행·도시신용합작사·농촌신용합작사 등 대중의 예금을 유치하는 금융기구 및 정책성은행을 말한다.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된 금융자산관리회사·신탁투자회사·재무회사·금융임대회사 및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기타 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는 이 법의 은행업금융기구의 감독관리규정을 적용한다.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이 법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비준을 거쳐 국외에 설립된 금융기구 및 전 2항의 금융기구의 국외 업무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은행업감독관리의 목표는 은행업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촉진하고 은행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을 수호하는 것이다.

은행업감독관리는 마땅히 은행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은

행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할 시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공개·공정·효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 및 기타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지방

정부·각급 정부부서·사회단체와 개인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중국인민은행·국무원의 기타 금융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은행업감독관리기구와 감독관리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감독관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감독관리기구**

제8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직책수행의 필요에 근거하여 파견기구를 설립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파견기구에 대하여

통일적인 지도와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파견기구는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

기구가 수권하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한다.

제9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업무인원은 그 임직과 상응하는 전문지식과 업무경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0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업무인원은 마땅히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업무에 임하고 공정·청렴하며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기구 등의

기업에서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업무인원은 마땅히 국가기밀을 유지하고 아울러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감독관리를 받는 은행업금융기

구 및 당사자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은행업감독

관리기구와의 감독관리정보 교류할 경우 정보의 기밀유지에 대하

여 안배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감독관리절차를 공개하고 감독관리책임제도와 내부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은행업금융기구에 대하여 금융리스크의 처치와 금융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사 등의 감독관리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정부·각급 유관부서는 마땅히 지원과 협조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회계심사·감찰 등 기관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활동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직책**

제15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은행업금융기구 및 그 업무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 규장·수칙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제16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조건과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업금융기구의 설립·변경·중지 및 업무범위

를 심사비준한다.

제17조 은행업금융기구의 설립을 신청하거나 은행업금융기구가 보유자본총액 또는 주식총액이 규정비율이상인 주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주주의 자금출처·재무상황·자

본보충능력과 신용상황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은행업금융기구 업무범위 내의 업무의 종류는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하거나 등록하여

야 한다. 심사비준이 필요하거나등록이 필요한 업무의 종류는 국

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정하고 공

표한다.

제19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은행업금융기구를 설립하거나 은행업금융기구의

업무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금융기구의 이사와 고급관리인원에 대하여 임직자격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

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제21조 은행업금융기구의 신중경영원칙은 법률·행정법규로 규정하며 또한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제정

할 수 있다. 전항의 신중경영원칙은 리스크관리·내부제어·자본충족율·자산품질·손실준비금·리스크집중·관련거래·자산유동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은행업금융기구는 신중경영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마땅히 규정된 기한 내에 다음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비준하거나 또는 비준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

하여 서면결정을 한다. 비준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마땅

히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一) 은행업금융기구의 설립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

월 이내이다.

(二) 은행업금융기구의 변경·중지 및 업무범위와 업무범위의 업

무 종류 증가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다.

(三) 이사와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심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제23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금융기구의 업무활동 및 그 리스크 상황에 대하여 비현장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은행업금융기구 감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은행업금융기구의 리스크 상황을 분

석· 평가하여야 한다.

제24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금융기구의 업무활동 및 그 리스크 상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현장조사절차를 제정하고 현장조사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제25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금융기구에 대하여 문서감독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중국인민은행이 제시하는 은행업금융기구의 조사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건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제27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금융기구 감독관리등급평가 시스템과 리스크경보체제을 구축하고 은행업금융기구의 등급평가

상황과 리스크 상황에 근거하여 현장조사의 빈도·범위와 필요한

기타 조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 돌발사건의 발견과 보고에 관한 직책책임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시스템 관련 은행업리스크, 사회안정을 심

각하게 저해하는 돌발사건을 발견하는 즉시 국무원 은행업감독

관리기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

구 책임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아울러 중국인민은행·국무원 재정부서 등 유관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중국인민은행·국무원 재정부서등의 유관부서와 은행업 돌발사건 처치제도를 수립하며 은행업 돌발

사건 처치방안을 제정하고 처리기구와 인원 및 그 직책·처치조치

와 처치절차를 명확히 하며 적시에 효과적으로 은행업 돌발사건

을 처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전국의 은행업금융기구의 통계데이터·보고서를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아울러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의 자율조직활동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은행업자율조직의 정관은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감독관리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4장 감독관리조치**

제33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직책수행의 필요에 근거하여 은행업금융기구가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표·이윤표와 기타 재무회계·통계보고

서·경영관리자료 및 등록회계사가 작성한 회계심사보고의 제출

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신중한 감독관리의 요구에 근거하여 다음 조치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一) 은행업금융기구에 진입하여 조사 실시

(二) 은행업금융기구의 업무인원 문의 및 조사사항에 대한 설명

의 요구

(三) 은행업금융기구의 조사사항 관련 서류·자료의 열람·복제 및

이전·은닉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건·자료의 봉인

(四) 은행업금융기구가 운용하는 전자컴퓨터 관리업무데이터를

운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의 진행은 마땅히 은행업금융감독관리기구 책임자의 비

준을 거쳐야 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할 시, 조사인원은 2명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아울러 합법적인 증명문건과 조사통지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인원이 2명 이하거나 또는 합법적인 증

명과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업금융기구는 조

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직책수행의 필요에 근거하여 은행업금융기구 이사·고급관리인원과 감독관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으

며, 은행업금융기구의 이사·고급관리인원에게 은행업금융기구의

관리활동과 리스크 관리의 중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6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은행업금융기구의 규정에 따라 진실하게 사회 대중에게 재무회계보고·리스크관리상황·이사와 고급관리인원

의 변경 및 기타 중대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7조 은행업금융기구가 신중경영원칙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 또는 성일급(省一級) 파견기구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

을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은행업금융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예금

인과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국무

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 또는 성일급 파견기구책임자의 비준을 거

쳐 정황을 구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 부분 업무의 잠정 중단과 신규업무 전개의 비준 정지 명령

(二) 이익배당금과 기타 수입의 분배 제한

(三) 자산 양도 제한

(四) 대주주의 주권 양도 명령 또는 관련 주주의 권리 제한

(五) 이사·고급 관리인원의 전직 명령 또는 기타 권리 제한

(六) 분점기구 증설 비준의 정지

은행업금융기구는 시정 후에 국무원 은행업 금융감독관리기구 또

는 성일급 파견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 또는 성일급 파견기구는 검사 후 신중경영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전항의 관련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8조 은행업금융기구에 이미 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신용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금인과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법에 의

거하여 당해 은행업금융기구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거나

또는 기구의 구조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인수인계와 기구구조조

정은 유관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9조 은행업금융기구에 위법경영·경영관리 부실 등의 정황이 존재하여 그 자격을 회수 취소하지 않으면 금융질서에 심각한 손해를 조성하거나 또는 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그 자격을 회수 취소할 권리가 있

다.

제40조 은행업금융기구가 인수인계·구조조정 또는 회수 취소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당해 은행업금융기구의 이사·고급관리

인원과 기타 업무인원에 대하여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직책의 수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수인계·기구의 구조조정 또는 회수 취소의 청산기간 중에 국무

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직접 책임을 지는

이사·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 직접 책임을 지는 이사·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

의 출국이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하는 경우 출국

관리기관에 법에 의거하여 출국의 금지를 통지한다.

(二) 사법기관에 재산의 이전·양도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기타

 권리 설정의 금지를 신청한다.

제41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 또는 성일급 파견기구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금융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혐

의가 있는 은행업금융기구·당해 기구의 업무인원 및 관련 행위자

의 계좌에 대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위법자금을 이전 또는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구책임자의 비준을 거

쳐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42조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범죄

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금융기구의 설립·변경·중지 및 업무

범위와 업무범위내의 업무종류를 심사 비준한 경우

(二)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금융기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한 경우

(三) 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돌발사건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四) 규정을 위반하고 계좌를 조사하였거나 또는 자금 동결을 신

청한 경우

(五)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금융기구에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처벌한 경우

(六) 직권 남용·직무 태만의 기타 행위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공금횡령·

뇌물수수·국가기밀 누설 또는 획득한 상업기밀을 누설하여 범죄

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

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제43조 은행업금융기구를 임의로 설립하였거나 또는 은행업금융기구의 업무활동에 불법으로 종사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

이를 단속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

관리기구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50만원(RMB) 이상

인 경우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위법 소득이 50만원(RMB) 미만인

경우 50만원(RMB)이상 2백만원(RMB)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은행업금융기구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50만원(RMB)이상인 경우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0만원(RMB) 미만인 경우 동시에 50만원(RMB

)이상 2백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

하거나 또는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휴업정

비를 명령하거나 또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범죄

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분점기구를 설립한 경우

(二) 비준을 받지 아니 하고 변경·중지한 경우

(三)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하지 아

니한 업무활동에 종사한 경우

(四)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이율·대출이율을 인상 또는 인하한 경

우

제45조 은행업금융기구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20만원(RMB) 이상

50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정비를 명령하거나

또는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 임직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 하고 이사·고급관리인원을 임

명한 경우

(二) 비현장감독관리 또는 현장조사를 거절 또는 방해한 경우

(三) 허위의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닉한 보고표·보고서 등의 서

류·자료를 제공한 경우

(四)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五) 신중경영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六) 이 법 제37조 규정하는 조치의 집행을 거절한 경우

제46조 은행업금융기구가 규정에 따라 보고표·보고서 등의 서류·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기

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RMB) 이상 30만

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은행업금융기구가 법률·행정법규 및 국가의 은행업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이 법 제43조부터 제

46조까지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정황에 따

라 구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 은행업금융기구에 직접 책임을 지는 이사·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규율처분을 명한다.

(二) 은행업금융기구의 행위가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이사·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경고하며, 5만원(RMB) 이상 50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三) 직접 책임을 지는 이사·고급관리인원의 일정기한 내지 평생

의 임직자격을 회수 취소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이사·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책임인의 일정기간 내지 평생의 은행

업 종사를 금지한다.

**제6장 부칙**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설립된 정책성 은행·금융자산관리회사의 감독관리에 대하여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

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된 외자 은행업금융기구·중외합자

은행업금융기구·외국 은행업금융기구의 분점기구에 대한 감독관

리는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

른다.

제50조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